



1. 특허발명의 개요

【청구항 8】 통신 회사의 서비스 제공 장치가 음성 기반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신자의 전화 단말기로부터 수신자로의 통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복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부가 정보인 전화 복권 당첨 결과 및 상기 전화 복권 당첨 결과로의 연결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전화 복권 당첨 결과, 상기 연결 정보와 상기 발신자에 상응하는 발신 번호를 포함하는 페이징 신호를 상기 수신자의 전화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연결 정보는, 상기 수신자의 선택에 의해 상기 전화 복권 당첨 결과에 상응하는 웹사이트로 링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 기능을 갖는 음성 기반 발신 번호 표시 서비스 방법.

2. 피고 실시발명의 개요

2. 피고 실시발명1(광고를 포함하는 정보제공서비스)의 구성

발신자의 단말기로부터 수신자의 단말기로의 문자통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문자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부가 정보를 지시하는 아이디와, 부가 정보 및 그 부가 정보로의 연결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수신자의 단말기로, 추출된 아이디 및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신호와, 추출된 부가 정보, 연결 정보 및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전송된 아이디에 상응하는 부가 정보는 광고, 공지 사항 및 뉴스 중 어느 하나로서 수신자의 단말기의 메모리에서 추출되거나 부가 정보 제공 장치로부터 수신되어, 수신자의 단말기에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되는 것이고,

상기 연결 정보는 수신자의 선택에 의해 부가 정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또는 전화 번호로 링크되는 것이고,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한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에 의해 등록되는 것이거나, 전화 복권 당첨 결과를 포함하는 것인 광고를 포함하는 정보제공서비스.

3. 특허법원의 판단

“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대비하면 피고 실시발명은 광고정보를 전송함에 있어서 MMS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특징이 있으나 MM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MM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통상의 창

작 범위 내에서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문자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데이터베이스(정보 제공자 서버에 기저장된 여러 광고 정보)로부터 부가 정보(광고 정보) 및 그 부가 정보로의 연결 정보(콜백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추출(전송을 제어)한다는 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부가 정보를 지시하는 아이디를 추출하여 전송하는 구성, (광고 정보)로서 부가 정보 제공 장치(정보 제공자 서버)로부터 수신되어 수신자의 단말기(이동통신기기)에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수신된 광고 정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되는 구성요소들은 각 국제공보에 개시되어 있거나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피고 실시발명은 전화 복권 당첨 결과가 부가정보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에는 전화 복권 당첨 결과가 광고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기간행물에 거래기반 광고의 예로는 할인쿠폰 등이 제시되어 있고, 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전자 복권 유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문자메시지로 복권 당첨 사실을 제공하여 표시하고, 사용자의 통화 버튼 입력에 따라 그 복권 당첨에 관한 구체적인 음성 안내 정보로 연결되도록 하는 구성이 이미 개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실시발명은 그 구성요소가 모두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피고 실시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1339 판결

약사변호사/바이오전공 변호사, 약사법, 행정소송, 특허심판소송, One-Stop 전략적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